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하는 경우를 정함 (안 제7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근무장”을 “근무장, 기동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버클 및 허리띠

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선박 및 항공기 검역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복을 착용할 때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별표 1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동복 상의	재질	가. 하복은 진남색으로 혼방직물(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로 한다. 나. 동복은 진남색으로 혼방직물(모,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로 한다.	가. 하복  (앞면)  (뒷면)
	제식	가. 하복 1) 반소매로 하고 깃은 스탠드칼라(stand collar) 형태로 한다. 2) 깃, 옆선 및 소매 안쪽에 배색을 넣는다. 나. 동복 1) 긴소매로 하고 깃은 스탠드칼라(stand collar) 형태로 한다. 2) 깃, 옆선 및 소매 안쪽에 배색을 넣는다. 3) 양쪽 소매에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하여 여밀 수 있게 한다. 4) 안감은 소매, 등판 전체에 기모 소재를 부착한다.	나. 동복  (앞면)  (뒷면)

기동복 하의	재질	가. 하복은 진남색으로 혼방직물(나일론, 스판덱스)로 한다. 나. 동복은 진남색으로 혼방직물(모,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스판덱스)로 한다.	 (앞면)  (뒷면)
	제식	가. 긴 바지로 한다. 나. 통 허릿단으로 제작하며 양쪽에 고무 밴드를 넣어 준다. 다. 앞 주름을 좌우 1개씩 넣고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단다.	

별표 1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동복 상의 및 제식	재질	남자 기동복 상의와 같은 재질로 하며, 제식은 남자 기동복 상의와 같다.	-
기동복 하의 및 제식	재질	남자 기동복 하의와 같은 재질로 하며, 제식은 남자 기동복 하의와 같다.	-

별표 3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동복	1벌	1년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을 포함한다.
-----	----	----	-----------------------

별표 2 중 “(제8조제2항 관련)”을 “(제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9조 관련)”을 “(제10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u>근무장</u>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복의 차림) ----- ----- <u>근무장, 기동장</u> ----- -----.
제6조(근무장) ① (생략)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u>검역업무를 수행할 때</u> 2. (생략) <u><신 설></u>	제6조(근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평상시 근무를 할 때</u> 2. (현행과 같음) 제7조(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u>점퍼,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u> 1. <u>기동복(하복 또는 동복)</u> 2. <u>점퍼(하복 또는 동복)</u> 3. <u>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u> 4. <u>구두</u> 5. <u>버클 및 허리띠</u> 6. <u>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u>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u>선박 및 항공기 검역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u> 2. <u>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복</u>

	<u>을 착용할 때</u> 3. 그 밖에 <u>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u>
<u>제7조 ~ 제12조</u> (생략)	<u>제8조 ~ 제13조</u> (현행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복의 착용 시기(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착 용 시 기
하 복	여름철(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 복	겨울철(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지급품 및 대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연한(제10조 관련)

1. 지급품: 지급품은 개인별로 지급하며, 지급품의 종류별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지급 수량	사용연한	비 고
정복	하복	1벌	2년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을 포함한다.
	동복	1벌	2년	
서 츠		1장	1년	
근무복	하복	1벌	1년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을 포함하되, 임용·전보 등의 사유로 근무복을 최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복 및 동복을 각각 2벌씩 지급할 수 있다.
	동복	1벌	1년	
기동복	하복	1벌	1년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을 포함한다.
	동복			
점퍼	하복	1장	2년	
	동복	1장	2년	
정 모		1개	3년	
근무모	여름용	1개	3년	
	겨울용	1개		
구 두		1켤레	1년	
안 전 화		1켤레	1년	항만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넥 타 이		2장	2년	
넥타이핀		1개	2년	
버클 및 허리띠		1개	2년	

2. 대여품: 대여품은 검역소별로 현원·근무상황 등에 따라 지급하며, 대여품의 종류별 사용연한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사용연한
임 부 복	1년
안 전 모	5년
방 한 복	3년
비 옷	2년